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략기술침해행위 처벌강화 및
예비·음모죄, 몰수·추징규정 신설〉
■ 김원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588호)

202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벌칙 기준 상향 및 미수범 처벌	2
2. 예비·음모죄 처벌 및 양벌규정, 몰수·추징 근거규정 신설	10
※ 참고자료	1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원이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2. 5.
3. 회부연월일 : 2026. 2.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반도체·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사건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으나,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이 낮아 범죄 억지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상향하고, 예비·음모죄, 몰수 및 추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가·경제 안보 및 산업경쟁력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제50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벌칙 기준 상향 및 미수범 처벌

개정안은 해외사용목적으로 전략기술을 유출·침해한 자에 대하여 각각 7년 이상의 징역 및 100억원 이하의 벌금(제15조제1호~제3호 위반시)을 병과하거나,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억원 이하의 벌금(제15조제5호~제8호 위반시)에 처하고(안 제50조제1항 및 제2항),

해외사용목적 없이 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각각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제15조 위반행위 중 제4호·제6호·제8호 제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제15조 제4호·제8호 위반시)에 처하도록 벌칙기준을 상향하며(안 제50조제3항 및 제4항),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범행에 착수한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6항 신설).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0조(벌칙) ①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제50조(벌칙) ① ----- ----- -----

현행	개정안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u>5년</u>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u>20억원</u>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 <u>7년</u> ----- ----- -- <u>100억원</u> -----.
②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5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u>20년</u> 이하의 징역 또는 <u>20억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 ----- ----- <u>3년 이상</u> ----- ----- <u>30억원</u> ----- -----.
③ 제15조 각 호(제4호·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u>15년</u> 이하의 징역 또는 <u>15억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 ----- ----- <u>20년</u> ----- ----- <u>20억원</u> ----- -----.
④ 제15조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u>5년</u> 이하의 징역 또는 <u>5억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 ----- <u>10년</u> ----- ----- <u>10억원</u> -----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신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우선, 벌칙 기준 상향(안 제50조제1항~제4항)과 관련하여 기술보호 법률간 보호법익 수준을 비교하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각종 신기술을 ‘산업기술’로 지정·고시·공고·인증하고, 그 중에서도 해외유출시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중대한 악영향이 우려되는 ‘국가핵

심기술’을 별도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데 비해,

동 법률은 국가·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이 크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현저한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어, 신기술 등을 폭넓게 지정한 산업기술이나 해외 유출시 중대한 악영향이 우려되는 국가핵심기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호체계 및 제재수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기술별 정의 규정은 참고자료 참조).

그러나 현행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은 해외사용목적으로 전략기술을 유출한 경우 징역형 외에도 각각 20억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2025년에 「산업기술보호법」¹⁾은 해외사용‘목적’ 요건을 해외사용‘고의’로 완화하는 한편, 국가핵심기술 유출시 65억원 이하의 벌금, 산업기술 유출시 3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유출된 경우 벌금형 기준을 상향한 바 있음.

1)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694호, 2025. 1. 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략)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기술유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산업기술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표 3] 기술보호법률간 벌칙수준 비교

구분		「산업기술보호법」 §36			「국가첨단전략산업법」 §50		
		요건	현행	개정안	요건	현행	개정안
해외사용 고의/목적 유출		① 국가핵심기술 (제14조제1호 ~ 제12호)	3년 ↑ & 65억 ↓ (병과)	7년 ↑ & 100억 ↓ (병과)	① 전략기술 (이하 동일) 제15조 제1호~ 제3호	5년 ↑ & 20억 ↓ (병과)	7년 ↑ & 100억 ↓ (병과)
		② 산업기술 (제14조제1호 ~ 제6호, 제12호)	15년 ↓ 30억 ↓	20년 ↓ 60억 ↓	② 제15조 제5호~ 제8호	20년 ↓ 20억 ↓	3년 ↑ 30억 ↓
	일반 유출	제14조제1호 ~ 제11호	10년 ↓ 10억 ↓	15년 ↓ 20억 ↓	제15조 (제4호·제6호 및 제8호 제외)	15년 ↓ 15억 ↓	20년 ↓ 20억 ↓
		제14조제12호 · 제13호	3년 ↓ 3억 ↓	7년 ↓ 7억 ↓	제15조제4호 · 제8호	5년 ↓ 5억 ↓	10년 ↓ 10억 ↓

이에 따라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법익을 가지는 전략기술이 해외사용목적으로 유출되는 경우의 벌금형 기준은 국가핵심기술이나 산업기술보다 오히려 낮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술보호법률간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고 형량간 균형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 법률의 벌칙 수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해외사용목적으로 유출하는 경우에 따른 벌금형 상한 뿐만 아니라 징역형 상한도 함께 상향하는 한편, 해외사용목적 없는 일반 유출에 대해서도 처벌 수준을 전반적으로 상향하고자 하고 있으므로, 처벌 수준의 비례성 및 형벌 체계상 균형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입법례 및 관련 개정안을 함께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안 제50조제1항은 징역형 하한을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정상참작을 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고 최소 3년 6개월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여야 하며²⁾,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례³⁾는 행위 유형의 폭이 매우 넓음에도 불구하고

2) 「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 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2021헌가9, 2023. 2. 23., 전원재판부]

【심판대상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

【전문】 - 【이 유】 - 4. 판단

나.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 위배 여부

(2) ... (중략) ...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5년’으로 정하였던 2020. 5. 19. 개정 이전의 구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과 달리 그 하한을 ‘징역 7년’으로 정함으로써, 주거침입의 기회에 행해진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법원이 정상참작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주거침입의 기회에 행해진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의 불법과 책임의 정도가 아무리 경미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으면 법원이 정상참작감경을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징역 3년 6월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어, 형벌개별화의 가능성이 극도로 제한된다. 이점에서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작량감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논거로 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던 위의 결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였던 기존 조문에 대한 합헌결정)들은 이제는 추종할 수 없게 되었다.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그 기회에 성폭력범죄를 행하는 경우는 전반적으로 불법과 책임이 중하게 평가되고,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의 행위 중에서도 강간이나 유사강간을 한 경우 못지않게 죄질이 나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이에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의 ‘상한’을 무기징역으로 높게 규정함으로써 불법과 책임이 중대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높게 책정하여 경미

하고 징역형 하한을 7년 이상으로 규정하여 일률적으로 엄하게 처벌하는 규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음.

동 법 제15조제1호~제3호에 따른 침해행위는 절취·기망·협박 등에 의한 직접적인 침해행위(제1호),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제2호) 및 이러한 위반행위가 개입된 전략기술을 고의로 취득·사용·공개 하는 행위 등(제3호)⁴⁾으로 전략기술 침해에 대한 관여행태가 다양하므로, 이러한 침해행위시 일률적으로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이 적절한 수준의

한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의 경우까지 모두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

(7) 심판대상조항은 그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고, 각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그 책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하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제청법원들과 청구인들은 평등원칙 위반도 주장하나,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되므로 그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4) 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종류

1. 절취·기망·협박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전략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전략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2. 제14조에 따른 전략기술보유자와의 계약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에 따라 전략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략기술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전략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전략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전략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전략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전략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전략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전략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전략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전략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5. 제1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전략기술을 수출하는 행위
6.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합병등을 하는 행위
7. 제14조에 따른 전략기술보유자와의 계약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에 따라 전략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전략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해당 전략기술보유자로부터 전략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전략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보유자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8. 전략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전략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처벌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징역형 하한을 7년 이상으로 규정한 현행 입법례를 살펴보면, 「형법」상 적국을 위한 간첩죄(§98⁵⁾), 「국가보안법」상 군사 또는 국가기밀누설죄(§46)와 같이 국가안보 및 군사상 기밀 보호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라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동 개정안과 유사하게 전략기술 침해행위시 벌칙수준을 상향하려는 취지로 발의된 개정안⁷⁾이 우리 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이고, 다른 기술보호법률인 「산업기술보호법」의 벌칙수준도 상향하고자 동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개정안⁸⁾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관련 개정안을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형법」 ※ 시행예정법률 [시행일: 2026. 9. 13.]

제98조(적국을 위한 간첩) ① 적국을 위하여 적국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6)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7) 의안번호 제2214685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1인), 2025. 11. 28. 발의

8) 의안번호 제2216587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0인), 2026. 2. 5. 발의

마지막으로, 미수죄 처벌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전략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는 목적범죄 또는 해외사용목적은 없으나 비교적 중한 전략 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제15조 위반행위 중 제4호·제6호·제8호 제외)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이를 완성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도 미수범으로 처벌하고자 함.

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는 실제 유출에 실패하더라도 실행 착수 단계에서 기술보호·관리체계가 약화되고 국가·경제안보 및 산업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상태가 초래될 수 있으며, 전략 기술은 한번 유출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여 사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과 같이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2. 예비·음모죄 처벌 및 양벌규정, 몰수·추징 근거규정 신설

개정안은 전략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는 목적으로 범죄(제50조제1항 및 제2항)를 예비·음모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외사용목적은 없으나 비교적 처벌수준이 중한 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제50조제3항 - 제15조 위반행위 중 제4호·제6호·제8호 제외)를 예비·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0조의2 신설).

그리고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침해행위등을 범하여 제50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 행위자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제50조에 따른 벌금형을 과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마련하며(안 제50조의3 신설),

제5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범죄수익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4 신설).

[표 4]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50조의2(예비·음모) ①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

현행	개정안
<신설>	한다. ② 제50조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의3(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제50조의4(몰수 및 추징) ① 제5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이하 이 항에서 “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몰수 및 추징에 관하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1조, 제12조를 준용한다.

우선, 예비·음모죄 처벌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미수범 처벌 대상인 범죄(제50조제1항~제3항)를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 즉 범죄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 단계라 하더라도 전략기술 유출을 위한 계획이나 공모가 이루어진 단계에 대해서도 처벌하고자 함.

계획·공모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기술보호 및 관리체계의 약점이 노출되고 실질적인 유출 위험이 증대될 수 있는데, 전략기술은 한번 유출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여 사후 대응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예비·음모 단계에 대해서도 이를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동 개정안과 같이 예비·음모 단계도 처벌하려는 개정안⁹⁾이 우리 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이므로, 이를 함께 심사하여 본죄-예비·음모죄 간 처벌 수준을 균형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표 5] 현행법-개정안간 예비·음모죄 상한 비교

구 분		본죄 상한		예비·음모죄 상한	
		징역	벌금	징역	벌금
현행법	§50 ① (해외사용목적유출& 제15조제1호~제3호 위반)	30년 ↓ (5년 ↑)	20억원 ↓	-	-
	§50 ② (해외사용목적유출& 제15조제5호~제8호 위반)	20년 ↓	20억원 ↓		
	§50 ③ (일반유출& 제4호·제6호·제8호 제외)	15년 ↓	15억원 ↓	-	-

9) 의안번호 제2214685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1인), 2025. 11. 28. 발의

구 분		본죄 상한		예비·음모죄 상한	
		징역	벌금	징역	벌금
김 원 이 의 원 안	§50 ① (해외사용목적유출& 제15조제1호~제3호위반)	30년 ↓ (7년 ↑)	100억원 ↓	10년 ↓	10억원 ↓
	§50 ② (해외사용목적유출& 제15조제5호~제8호위반)	30년 ↓ (3년 ↑)	30억원 ↓		
	§50 ③ (일반유출& 제4호·제6호·제8호 제외)	20년 ↓	20억원 ↓	7년 ↓	7억원 ↓
송 재 봉 의 원 안	§50 ① (해외사용고의로 유출& 제15조제1호~제10호위반)	30년 ↓ (5년 ↑)	85억원 ↓	3년 ↓	3천만원 ↓
	- (제2항 삭제)				
	§50 ③ (일반유출& 제15조제1호~제9호위반)	15년 ↓	15억원 ↓	2년 ↓	2천만원 ↓

다음으로, 양벌규정 신설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본인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침해행위등은 행위자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는 경쟁 기업 등의 업무수행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행위자 개인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기술 보호를 위한 예방 효과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법인 또는 개인의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안과 같이 위반행위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만 면책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수급안정화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요청하여 습득한 자료 및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일반적인 법인·개인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위반행위라기보다 공무상 습득한 자료 및 정보의 취급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이므로, 법인이나 개인에 대한 양벌규정을 공무 위반 시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6] 수급안정화조정 조치 규정(동법§10)

제10조(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① 정부는 천재지변, 국제통상여건의 급변 등으로 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안정적 수급과 산업 공급망의 원활한 기능에 지장이 초래되고 국민경제 활동이 현저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사업자·수요자,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이하 “수급안정화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생산계획의 수립·실시 및 변경
2. 국내우선공급 등 공급계획의 수립·실시 및 변경
3. 운송·보관·비축 또는 양도
4. 수급을 위한 물류·유통구조 정비 및 관련 시설의 개선·확충
5. 대체품목의 실증과 성능검증
6. 그 밖에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략)

③ 정부는 수급안정화조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업자등에 대하여 수급안정화조정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협의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국방상 또는 국가·경제안보상의 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생략)

⑤ 누구든지 제3항에 따라 습득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정보를 취득, 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에서 같다)하는 행위
2.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관련 기업 및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자료·정보를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자료·정보를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자료·정보를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4.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자료·정보를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5.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자료·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자료·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지막으로, 몰수·추징 근거규정 마련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침해행위 등의 범죄(제50조제1항~제5항)로부터 얻은 수익이나 범죄수익으로부터 유래한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함으로써 범죄행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자 함.

각종 유출·침해행위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징역형 또는 벌금형 외에도 범죄수익 등을 몰수·추징함으로써 범죄행위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수반하도록 하므로, 범죄유인을 억제하고 예방효과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안 제50조의4제2항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몰수·추징과 관련된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범죄수익의

특정·추적·환수 및 집행에 필요한 절차적 근거를 함께 마련하고자 하는데,

침해행위 특성상 범죄수익이 해외 또는 제3자로 은닉·이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과 같이 관련 절차 및 집행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¹⁰⁾으로써 범죄수익 환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56

1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준용조문 목록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제9조(몰수의 요건 등)
제10조(추징)
제10조의3(몰수·추징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
제10조의4(범죄수익등의 추징)
제11조(국제 공조)
제12조(「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

라. 삭제 <2025. 1. 21.>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

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핵심전략기술

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된 해양수산신기술

카.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2.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제 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대상기술을 선정함에 있어서 해당기술이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 확산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이라 한다)이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을 말한다.

* 제11조(전략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조정위원회의 심의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기술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기술이 산업 공급망 및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2. 해당 기술의 성장잠재력과 기술난이도
3. 해당 기술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4. 해당 기술이 가지는 산업적 중요성
5. 해당 기술이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참고 2

최근 주요 기술유출 사건 처벌사례

□ (반도체 분야) 반도체 HKMG 핵심기술 유출

피해기업	국내 반도체 대기업 ㄱ사
유출기술	국가핵심기술(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유출방식	ㄱ사의 중국 법인에서 근무하던 A씨가 퇴사 직전 도중 반도체 공정 관련 자료 4,000여 장을 출력 후 무단 반출하여 중국 IT 기업 ㄴ사에 유출
진행상황	대법원 판결 확정('25.8)
처벌	1심('24.11) :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2천만원 선고 2심('25.5) : A씨에게 징역 5년, 벌금 3천만원 선고 3심('25.8) :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 확정

□ (디스플레이 분야) 스마트폰 OLED 엣지패널 기술 유출사건

피해기업	국내 디스플레이 대기업 ㄱ사			
유출기술	① 영업비밀 (OLED 곡면 합착기술 관련 설비사양서, 패널 도면 등)			
유출방식	ㄴ사의 대표인 A씨는 ㄱ사와 공동개발한 OLED 엣지 패널 설비 관련 기술을 중국에 수출하고자 하였으나, ㄱ사의 반대로 무산되자 A씨의 가족 명의로 별도의 법인 ㄷ사를 설립한 후 중국 ㄹ사로 우회 수출을 시도			
진행상황	대법원 판결 확정('23.7)			
처벌	<피고인별 세부 판결 형량>			
	구분	피고명	판결 형량	
	주범	A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공범	B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C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D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E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F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G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H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1천만원
			I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1천만원
	양벌	ㄴ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원	
		ㄷ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원	

□ (자동차분야) 자율주행 관련 라이다(LIDAR) 기술 유출 사건

피해기업	국내 소재 ㄱ대학
유출기술	① 첨단기술 (스마트카 분야 차량용 레이저 레이더 기술), ② 첨단기술 (시스템 분야 지사·본사간의 안전한 네트워크 접속기술 및 종단간 암호화 기술), ③ 첨단기술 (소자·모듈 분야 Access Network용 DSP 등), ④ 영업비밀 (레이더 기술 관련 연구자료)
유출방식	ㄱ대학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A씨가 ㄱ대학 소속 석·박사 연구원들만 접속할 수 있는 클라우드 권한을 중국 ㄴ대학의 교수 및 연구원들에게 접속 권한을 부여하여 라이다(LIDAR) 연구자료 등 첨단기술을 유출
진행상황	대법원 판결 확정('24.5)
처벌	1심('21.8) : 사기·업무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2심('24.2) : 사기 및 업무방해 부분도 유죄로 인정되어 A씨 징역 2년 선고 3심('24.5) :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확정 판결

참고 3

기술유출 관련 해외 주요국 처벌 수준

- **(미국)** 영업비밀을 외국 정부·기관 등의 이익이 될 것을 알거나 의도한 절취·복제·전달 등 행위에 대해 **20년 이하 징역, 500만 달러(약 65억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Economic Espionage Act, 18 U.S.C. §1831)
- **(일본)** 영업비밀을 국외에서 사용할 목적 또는 알면서 침해·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3천만엔(약 28억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부정경쟁방지법 제21,22조)
- **(대만)** 국가핵심기술을 해외·중국·홍콩·마카오 사용 목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12년 이하 징역, 1억 대만달러(약 45억원) 이하 벌금**(국가안전법)
- **(중국)** 영업비밀을 외국을 위해 불법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및 벌금*** 병과, 상황이 특히 심각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벌금** 병과(형법)
 - * 벌금 상한액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법관이 피고인의 재산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독일)** 영업비밀을 외국 공개하는 등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영업비밀보호법)
 - * 독일 형법 체계상 벌금형의 상한선이 법률에 특정 금액으로 고정되지 않음
- **(영국)** 영업비밀을 외국을 위해 취득·공개하는 등 행위에 대해 **14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National Security Act)
 - * 「법률구조, 양형 및 범죄자 처벌법」 개정('15.3)에 따라 기존 5천파운드(약 1천만원)의 벌금액 상한 폐지